|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 (4)**  법석[2017]16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 (4)>가 2016년 12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0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7년 8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정확한 적용을 목적으로 인민법원의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회사 결의의 효력, 주주의 알 권리, 이익배당권, 우선매수권 및 주주대표소송 등 사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회사의 주주•이사•감사 등이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불성립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법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제2조 회사법 제22조 제2항을 근거로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는 소송 제기 시점에 회사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 원고가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불성립,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건은 회사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결의와 연관된 기타 이해관계자는 법에 의거하여 제3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원고 자격을 보유한 타인이 동일한 청구취지로 전 항의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주주가 제기한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가 회사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단, 회의 소집절차 또는 표결절차의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으로써 당사자가 결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단, 회사법 제37조 제2항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전체 주주가 결의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2) 회의에서 결의 사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3) 회의에 출석한 인원수 또는 주주가 보유한 표결권이 회사법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회의 표결 결과가 회사법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결의의 불성립을 초래하는 기타의 경우.  제6조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판정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회사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간에 해당 결의에 의거하여 형성된 민사법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주주가 회사법 제33조, 제97조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특정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회사가 증거를 제출하여 전 항의 원고가 소송 제기 시점에 회사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단, 원고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사실을 증명하는 초보적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에 따라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의 회사 특정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8조 유한책임회사가 증거를 제출하여 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황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주주가 회사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주주가 회사의 주영업활동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고 있거나 타인을 위하여 경영하고 있을 경우.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체 주주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2) 주주의 회사 회계장부 열람 목적이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3) 회사에 열람을 신청하기 전 3년 내에 해당 주주가 회사 회계장부의 열람을 통하여 입수한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을 경우.  (4) 주주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타의 경우.  제9조 회사정관•주주간계약서 등을 통하여 회사법 제33조, 제90조에 규정된 주주의 회사 서류•자료 열람•복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였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주주의 열람•복사를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주가 회사 특정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인민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지지하는 경우 특정 서류•자료를 열람•복사하는 시간•장소와 특정 서류•자료의 명록을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주가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회사의 서류•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현장에 출두한 상태에서 회계사•변호사 등 법률 또는 업무수행규범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중개기구 업무수행인력의 보조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주주가 알 권리를 행사한 후 회사의 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가 가해진 것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10조에 따라 주주의 회사 서류•자료 열람을 보조하는 회계사•변호사가 회사의 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가 가해진 것에 대하여 회사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의 이사•고급관리자 등이 법에 정해진 직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법에 따라 회사법 제33조, 제97조에 규정된 서류•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되어 주주가 법에 의거하여 책임이 있는 회사의 이사•고급관리자를 상대로 민사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주가 배당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기타 주주가 동일 이익배당 방안에 의한 배당 지급을 청구취지로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가 상세한 이익배당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유효한 주주회의•주주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가 배당 지급을 거절하였고 그의 결의 이행불능에 관한 항변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가 결의서에 명시된 상세한 이익배당 방안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배당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상세한 이익배당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주주회의•주주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법률규정을 어기고 주주권을 남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뤄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기타 주주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16조 상속으로 인해 유한책임회사의 개인주주 변경이 발생한 상태에서 기타 주주가 회사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체 주주간에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제17조 유한책임사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양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기타 주주의 과반수가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해당 지분을 매입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주주의 동의하에 양도가 이뤄지는 지분에 대하여 양도주주가 서면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분양도의 동등 조건을 통보해야 한다고 기타 주주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주주의 동의하에 양도가 이뤄지는 지분에 대하여 양도주주 이외의 기타 주주가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여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양도주주가 이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양도를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8조 인민법원은 회사법 제71조 제3항 및 이 규정에서 언급된 '동등 조건'의 동등성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지분의 수량, 가격, 지급방식 및 지급기한 등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양도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양도를 통보를 받은 후 회사정관에 규정된 권리행사기간 내에 지분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회사정관에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통보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통보서에 명시된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통보서에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은 30일로 한다.  제20조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기타 주주가 양도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장한 후에 지분양도를 포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체 주주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기타 주주가 양도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지분양도 사항에 대한 기타 주주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기, 악의적 공모 등 수단으로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함으로써 기타 주주가 동등 조건으로 해당 양도지분을 매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 동등 조건을 인지한 날 또는 응당히 인지하여야 할 날로부터 30일 내에 우숸매수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지분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된다.  전 항의 기타 주주가 동등 조건에 따른 양도지분 매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분양수도계약 및 지분변경 효력 확인 등 청구만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타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주 이외의 지분양수인이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양도주주에게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경매를 통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법 제71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72조에 규정한 '서면통보', '통보', '동등 조건'의 적용은 관련 법률•사법해석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적법하게 개설된 재산권거래소를 통하여 유한책임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법 제71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72조에 규정한 '서면통보', '통보', '동등 조건'의 적용은 재산권거래소의 거래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가 회사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고급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감사회 주석 또는 감사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한책임사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한책임회사의 이사가 회사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법 제1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사장 또는 집행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제24조 회사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이사•감사•고급관리자 또는 타인을 상대로 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제3자로 지정하여 회사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회사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타 주주가 동일한 청구취지로 전 항의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승소 이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주주가 본인에게 민사책임을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제기한 소송에서 인민법원이 그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한 경우 소송 참가로 인해 주주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에 최종심이 끝나지 아니한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최종심을 마쳤거나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四）**  法释〔2017〕16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四）》已于2016年12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0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7年9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7年8月25日  为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结合人民法院审判实践，现就公司决议效力、股东知情权、利润分配权、优先购买权和股东代表诉讼等案件适用法律问题作出如下规定。  　　第一条 公司股东、董事、监事等请求确认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决议无效或者不成立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受理。  　　第二条 依据公司法第二十二条第二款请求撤销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决议的原告，应当在起诉时具有公司股东资格。  　　第三条 原告请求确认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决议不成立、无效或者撤销决议的案件，应当列公司为被告。对决议涉及的其他利害关系人，可以依法列为第三人。  　　一审法庭辩论终结前,其他有原告资格的人以相同的诉讼请求申请参加前款规定诉讼的，可以列为共同原告。  　　第四条 股东请求撤销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决议，符合公司法第二十二条第二款规定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但会议召集程序或者表决方式仅有轻微瑕疵,且对决议未产生实质影响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五条 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决议存在下列情形之一，当事人主张决议不成立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  　　（一）公司未召开会议的，但依据公司法第三十七条第二款或者公司章程规定可以不召开股东会或者股东大会而直接作出决定，并由全体股东在决定文件上签名、盖章的除外；  　　（二）会议未对决议事项进行表决的；  　　（三）出席会议的人数或者股东所持表决权不符合公司法或者公司章程规定的；  　　（四）会议的表决结果未达到公司法或者公司章程规定的通过比例的；  　　（五）导致决议不成立的其他情形。  　　第六条 股东会或者股东大会、董事会决议被人民法院判决确认无效或者撤销的，公司依据该决议与善意相对人形成的民事法律关系不受影响。  　　第七条 股东依据公司法第三十三条、第九十七条或者公司章程的规定，起诉请求查阅或者复制公司特定文件材料的，人民法院应当依法予以受理。  公司有证据证明前款规定的原告在起诉时不具有公司股东资格的，人民法院应当驳回起诉，但原告有初步证据证明在持股期间其合法权益受到损害，请求依法查阅或者复制其持股期间的公司特定文件材料的除外。  　　第八条 有限责任公司有证据证明股东存在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认定股东有公司法第三十三条第二款规定的“不正当目的”：  　　（一）股东自营或者为他人经营与公司主营业务有实质性竞争关系业务的，但公司章程另有规定或者全体股东另有约定的除外；  （二）股东为了向他人通报有关信息查阅公司会计账簿，可能损害公司合法利益的；  　　（三）股东在向公司提出查阅请求之日前的三年内，曾通过查阅公司会计账簿，向他人通报有关信息损害公司合法利益的；  　　（四）股东有不正当目的的其他情形。  　　第九条 公司章程、股东之间的协议等实质性剥夺股东依据公司法第三十三条、第九十七条规定查阅或者复制公司文件材料的权利，公司以此为由拒绝股东查阅或者复制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条 人民法院审理股东请求查阅或者复制公司特定文件材料的案件，对原告诉讼请求予以支持的，应当在判决中明确查阅或者复制公司特定文件材料的时间、地点和特定文件材料的名录。  　　股东依据人民法院生效判决查阅公司文件材料的，在该股东在场的情况下，可以由会计师、律师等依法或者依据执业行为规范负有保密义务的中介机构执业人员辅助进行。  　　第十一条 股东行使知情权后泄露公司商业秘密导致公司合法利益受到损害，公司请求该股东赔偿相关损失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  　　根据本规定第十条辅助股东查阅公司文件材料的会计师、律师等泄露公司商业秘密导致公司合法利益受到损害，公司请求其赔偿相关损失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  　　第十二条 公司董事、高级管理人员等未依法履行职责，导致公司未依法制作或者保存公司法第三十三条、第九十七条规定的公司文件材料，给股东造成损失，股东依法请求负有相应责任的公司董事、高级管理人员承担民事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  　　第十三条 股东请求公司分配利润案件，应当列公司为被告。  　　一审法庭辩论终结前，其他股东基于同一分配方案请求分配利润并申请参加诉讼的，应当列为共同原告。  　　第十四条 股东提交载明具体分配方案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的有效决议，请求公司分配利润，公司拒绝分配利润且其关于无法执行决议的抗辩理由不成立的，人民法院应当判决公司按照决议载明的具体分配方案向股东分配利润。  　　第十五条 股东未提交载明具体分配方案的股东会或者股东大会决议，请求公司分配利润的，人民法院应当驳回其诉讼请求，但违反法律规定滥用股东权利导致公司不分配利润,给其他股东造成损失的除外。  　　第十六条 有限责任公司的自然人股东因继承发生变化时，其他股东主张依据公司法第七十一条第三款规定行使优先购买权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公司章程另有规定或者全体股东另有约定的除外。  　　第十七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向股东以外的人转让股权，应就其股权转让事项以书面或者其他能够确认收悉的合理方式通知其他股东征求同意。其他股东半数以上不同意转让，不同意的股东不购买的，人民法院应当认定视为同意转让。  　　经股东同意转让的股权，其他股东主张转让股东应当向其以书面或者其他能够确认收悉的合理方式通知转让股权的同等条件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  　　经股东同意转让的股权，在同等条件下，转让股东以外的其他股东主张优先购买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但转让股东依据本规定第二十条放弃转让的除外。  　　第十八条 人民法院在判断是否符合公司法第七十一条第三款及本规定所称的“同等条件”时，应当考虑转让股权的数量、价格、支付方式及期限等因素。  第十九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主张优先购买转让股权的，应当在收到通知后，在公司章程规定的行使期间内提出购买请求。公司章程没有规定行使期间或者规定不明确的，以通知确定的期间为准，通知确定的期间短于三十日或者未明确行使期间的，行使期间为三十日。  　　第二十条 有限责任公司的转让股东，在其他股东主张优先购买后又不同意转让股权的，对其他股东优先购买的主张，人民法院不予支持，但公司章程另有规定或者全体股东另有约定的除外。其他股东主张转让股东赔偿其损失合理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  　　第二十一条 有限责任公司的股东向股东以外的人转让股权，未就其股权转让事项征求其他股东意见，或者以欺诈、恶意串通等手段，损害其他股东优先购买权，其他股东主张按照同等条件购买该转让股权的，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但其他股东自知道或者应当知道行使优先购买权的同等条件之日起三十日内没有主张，或者自股权变更登记之日起超过一年的除外。  　　前款规定的其他股东仅提出确认股权转让合同及股权变动效力等请求，未同时主张按照同等条件购买转让股权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其他股东非因自身原因导致无法行使优先购买权,请求损害赔偿的除外。  　　股东以外的股权受让人，因股东行使优先购买权而不能实现合同目的的，可以依法请求转让股东承担相应民事责任。  　　第二十二条 通过拍卖向股东以外的人转让有限责任公司股权的，适用公司法第七十一条第二款、第三款或者第七十二条规定的“书面通知”“通知”“同等条件”时，根据相关法律、司法解释确定。  　　在依法设立的产权交易场所转让有限责任公司国有股权的，适用公司法第七十一条第二款、第三款或者第七十二条规定的“书面通知”“通知”“同等条件”时，可以参照产权交易场所的交易规则。  　　第二十三条 监事会或者不设监事会的有限责任公司的监事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款规定对董事、高级管理人员提起诉讼的，应当列公司为原告，依法由监事会主席或者不设监事会的有限责任公司的监事代表公司进行诉讼。  　　董事会或者不设董事会的有限责任公司的执行董事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款规定对监事提起诉讼的，或者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三款规定对他人提起诉讼的，应当列公司为原告，依法由董事长或者执行董事代表公司进行诉讼。  　　第二十四条 符合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款规定条件的股东，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二款、第三款规定，直接对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或者他人提起诉讼的，应当列公司为第三人参加诉讼。  　　一审法庭辩论终结前，符合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款规定条件的其他股东，以相同的诉讼请求申请参加诉讼的，应当列为共同原告。  　　第二十五条 股东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二款、第三款规定直接提起诉讼的案件，胜诉利益归属于公司。股东请求被告直接向其承担民事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六条 股东依据公司法第一百五十一条第二款、第三款规定直接提起诉讼的案件，其诉讼请求部分或者全部得到人民法院支持的，公司应当承担股东因参加诉讼支付的合理费用。  　　第二十七条 本规定自2017年9月1日起施行。  　　本规定施行后尚未终审的案件，适用本规定；本规定施行前已经终审的案件，或者适用审判监督程序再审的案件，不适用本规定。 |